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삼성생명보험(주)

2.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6. 6. 18.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 원 등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4. 제재대상사실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동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거나,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삼성생명보험(주)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3.1.31. 변조한 진료확인서를 사진 촬영 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온라인 사고보험청구서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A보험회사에 실손의료비를 청구하였으나, 회사의 자체조사 결과 위와 같은 변조 사실이 발각되어 66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102조의2
2. 「보험업법」 제102조의3